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3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1.

발 의 자:김예지・김형동・주호영

송석준 · 임종득 · 최수진

강대식 · 김도읍 · 김선교

박덕흠 · 김승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, 저소득층, 농어촌 주민, 다문화가족의 구성원,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,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,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,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6조 및 제7조).

법률 제 호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"편의시설"을 "편의시설(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3호 중 "편의시설"을 "편의시설(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)	제6조(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	①
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지식정보 취약계층(이하 "지식	
정보 취약계층"이라 한다)의	
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	
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	
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하	
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도서관 <u>편의시설</u> 의 확충과	2 <u>편의시설(장애인열람</u>
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	<u>실을 포함한다)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도서관의 책무) ①・② (생	제7조(도서관의 책무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	③
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	
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	
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	
한다.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<u>편의시설</u> 확충, 이용편의 제	3. 편의시설(장애인열람실을 포

공 및 전문인력 배치	합한다)
4. • 5. (생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